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93 발의연월일: 2021. 6. 15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서영교 · 한준호

이병훈 · 박 정 · 박성준

오영환 · 양기대 · 이수진

유정주 · 박상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·청 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음.

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, 물가상 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,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항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함에도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

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.

이에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「부가가치세법」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(안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79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(같은 호가목은 제외한다), 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・경비용역 및 청소용역
 - 가. 수도권을 제외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
 - 나.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(戶)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
- 22.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(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대한 면세) ① -----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~ 20. (생 략) 1. ~ 20. (현행과 같음) 2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 <신 설> 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 체(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 다), 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 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「공중위생 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 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 리용역 · 경비용역 및 청소용 역 가. 수도권을 제외한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
법률」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.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 호(戶)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2.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(액 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) ② (생 략)